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스타 한국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14.92%	수익률 변동성: <u>37.09%</u>
	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	위험등급: <u>2등급(높은 위험)</u>
	부책임: 김고은	부책임: 김고은/ <u>한기웅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허승재/장여선 부책임: 김고은/유병우	책임: 허승재/ <u>유병우</u> 부책임: 김고은/ <u>한기웅/정상우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설정 후 3년 미경과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단기자금 증권 자투자신탁(단기자금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0.18%	수익률 변동성: <u>0.00%</u>
	책임: 강진원 부책임: 양은아	책임: <u>정상우</u> 부책임: <u>유병우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스타 단기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3.08%	수익률 변동성: <u>2.96%</u>
	책임: 강진원 부책임: 유병우	책임: <u>이석호</u> 부책임: <u>여동현</u>
	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(주)국민은행	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(주)케이비펀드파트너스 ※ 일반사무관리업무 분사에 따른 사명 변경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예금자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25.39%	수익률 변동성: <u>50.65%</u>
	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 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* 환급비율: 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소 득금액. 단, ‘환급비율>1’이면 1, ‘환급비율<0’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.	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 다. 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 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 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 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. (※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 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 로 환원함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.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연금 유로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16.20%	수익률 변동성: <u>36.19%</u>
	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 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x환급비율 * 환급비율: 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소 득금액. 단, ‘환급비율>1’이면 1, ‘환급비율<0’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.	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: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(중략) 원천징수하고 있습니 다. 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 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 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 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. (※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 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 로 환원함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(중략) 비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.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개인용 MMF P-1호
-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
- KB 법인용 MMF I-2호(국공채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0.00%	수익률 변동성: <u>0.00%</u>
	부책임: 강진원/장여선	부책임: <u>정상우</u> /장여선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스타 법인용 MMF I-101호(국공채)
- KB 법인용 MMF I-1호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부책임: 강진원/장여선	부책임: <u>정상우</u> /장여선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개인연금 단기자금 증권 자투자신탁(단기자금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강진원	책임: <u>정상우</u>
	부책임: 양은아	부책임: <u>유병우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단기 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장여선	책임: <u>유병우</u>
	부책임: 강진원/유병우	부책임: <u>정상우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임민규	책임: <u>윤태환</u>
	부책임: 윤성노	부책임: <u>강재구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임민규/이종혁	책임: <u>강재구</u> /이종혁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스타 ESG 우량 종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투자설명서	책임: 정상우	책임: <u>최창균</u>
	부책임: 유병우	부책임: <u>손경선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- KB 머니마켓 액티브 증권 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생략 4. 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”이라 한다) 5. ~ 8. 생략 ②~③생략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좌동 4. 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법 시행령 제241조에서 정한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(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(이하 “집합투자증권”이라 한다) 5. ~ 8. 좌동 ②~③좌동
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20%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7. 생략 8.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%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7. 좌동 8. <u>집합투자증권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부책임: 강진원/유병우	부책임: <u>정상우</u> /유병우
	-	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(신설) <u>13.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‘머니마켓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, 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장부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</u>
	-	제2부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신설) <u>(2) 기존 MMF와의 차이점</u> -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‘머니마켓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, MMF와 다르게 투자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리스크가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
	제2부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4)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1) ~ 2) 생략	제2부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4)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1) ~ 2) 좌동 (신설) <u>3) 이 투자신탁은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국내채권 및 기업어음 등에 60%이상, 양도성예금증서 및 MMF 등에 40%이하로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</u>

		<u>낮은 편입니다.</u> <u>또한, 당일 결제가 가능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당일 매매를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여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</u> <u>다만, 투자대상의 유동성 부족, 거래정지, 환매중지 등 갑작스러운 시장상황 변경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발생시 Repo매도전략 등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.</u> <u>※ Repo매도(환매조건부매도):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, Repo매도를 통해 현금 조달이 가능하며, 조달된 현금으로 유동성 대응 및 유사시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.</u>
	-	제2부 10. 나. 특수위험 <u>(신설) 투자신탁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 위험: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명칭 내 ‘머니마켓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, MMF와 다르게 투자 대상, 안정적 자산, 잔존만기, 유동성 비율 등 MMF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장부가평가를 받는 MMF와 달리 시가평가를 받는 펀드이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투자위험이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.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(예정)일: 2025년 04월 11일(금)